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13호**

시정명령 재결

202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3호(시정명령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1호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주)청\*\*\*\*(\*\*\*\* \*\*\*)

제\*\*\*\*\* \*\* \*\* \*\* \*\*

귀사가 소유·운항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귀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보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귀사가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간과한 점, 안전관리조직의 구성과 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화물량과 적재·고박방법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채 화물을 운송한 점, 사고 순간에 선원들이 여객을 구호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점 등이 심판의 과정에서 식별되었는바, 이는 이 건 사고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와 인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한 선박의 복원성에 주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귀사의 안전관리조직이 정확하게 구성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동 선박이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때 관련 규정과 기준은 준수하는지, 특히 비상상황에서 선원과 직원이 대처할 능력과 훈련이 되었는지 등을 귀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안\*\*(\*\*\*\*.\*.\*.)

전\*\*\* \*\* \* \*\* \* \*\* \* \*\* \*

귀하가 이사로 근무하던 (주)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보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하가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선사의 안전관리자임에도 선박 운항과 여객·화물 수송에 관한 일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에 관한 필수 정보를 관련 직원과 선장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못했으며, 선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이 여객의 구호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바, 이는 이 건 사고의 근원적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와 인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필수 정보를 식별하여 이를 선장과 관련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며, 내·외부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안전관리에 환류시키고, 더욱이 직원과 선사의 비상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등, 귀하가 선사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이러한 상태를 확보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김\*\*(\*\*\*\*.\*.\*\*.\*)

인\*\*\*\*\* \*\* \*\* \*\* \*\*, \*\*\*\*\* (\*\*, \*\*\*\*\*)

귀하가 물류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주)청해진해운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보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하는 이 선박의 화물운송 요청을 접수하여 하역과 고박 업체가 화물을 제대로 적재하고 고박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이 선박이 안전한 복원성 상태에서 실을 수 있는 화물량과 적재조건의 기준을 위반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적재와 고박의 방법을 현장에서 지시하여, 이 선박이 복원성 기준에 미달 되도록 하였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와 인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 가능한 화물량은 정해진 기준에 반드시 맞추고, 적재와 고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시하고, 하역인부가 규정에 맞게 시행하는지를 당해 업체가 분명히 확인토록 업체를 관리하게 하는 등, 귀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맞게 수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이\*\*(\*\*\*\*.\*\*.\*\*.\*)

인\*\*\*\*\* \*\* \*\* \*\* \*\*, \*\*\*\*\* (\*\*, \*\*\*\*\*)

귀하가 하역업체의 팀장으로서 화물을 적재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이 규정에 맞지 않게 적재되고 부실하게 고박되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의 세월호가 갑작스러운 선회와 경사에 의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물이 규정과 달리 실리고 고박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하여 귀하가 이 선박에 대한 하역업체의 팀장으로서 화물이 실리는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귀하의 실질적 책임 소관으로 판단되는 고박의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소홀히 하였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업무와 관련한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의무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된 모든 규정의 안전기준을 분명히 인지하여 화물의 적재나 고박의 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전\*\*(\*\*\*\*.\*.\*\*\*)

경\*\* \*\*\* \*\* \* \*\* \* \*\* \* \*\* \* \*\* - \*, \*\*\*\* (\*\*\*, \*\*\*\*\*)

귀하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를 접수한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보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하는 화물 적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수리하고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만재흡수선을 확인하는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로서 소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와 인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항 상태와 신고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신\*\*(\*\*\*\*.\*.\*.)

제\*\*\*\*\*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보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건 사고는 귀하가 승선했던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건 사고의 발생과 귀하의 행위를 인과관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귀하가 승선했던 기간에 3등항해사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 작성과 비상훈련 기록에 대한 감독과 선원들의 화물 적재와 복원성 유지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소홀하였음이 심판의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와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